



정부가 지원하는 믿음직한 보험

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

조용하게 키운 **향어**!
양식보험으로 대비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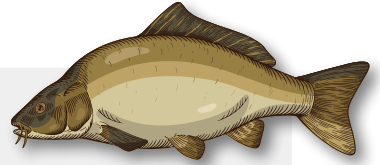
가입품목

축제식(지수식) 향어
(전장 2.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것)

가입기간

1.1~6.30, 10.1~12.31(7~9월 가입불가)

양식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! 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



☑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여러분의 양식장을 지켜드립니다.

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,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보험이 지킴이가 되어 드립니다.

☑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와드립니다.

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을 해드리며, 손해방지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.

☑ 어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정부의 재난지원금(복구비)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.

☑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보험입니다.

이 보험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고지원하고, 거대재해 발생시는 국가재보험제도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분담합니다.

📋 가입안내

☑ 보험대상 목적물

구분	보험대상물	종류
양식수산물	축제식(지수식) 향어	전장 2.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 (단,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)
양식시설물	축제식(지수식) 양식시설	축제식(지수식) 양식시설 일체

☑ 보험가입 방법

구분	가입방법
보험가입지역	전북(전주시, 익산시, 김제시, 정읍시, 완주군, 부안군, 고창군), 전남(함평군)
보험가입자	내수면 양식업면허(신고증명서 포함)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향어를 양식하는 자
보험가입단위	개별 양식장 단위(한 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. 단,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)
보험기간	1년(단,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.)
보험가입기간	1.1~6.30, 10.1~12.31 (7~9월 가입불가)

※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**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**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(3종) - 양식장원장 작성(수협양식), 양식관련 허가서류(지자체 발급), 입식증빙자료(입식신고서, 세금계산서 등)

☑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

구분	가입선택	보험가입금액	자기부담금 ²⁾	
			표준형 I 형	표준형 II 형
주계약(양식수산물)	의무가입	최대 보유가액 ¹⁾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(단, 최저 50% 이상)	(매 사고당) 손해액 × 10%~40% ³⁾ * 자기부담금 최저액 : 보험가입금액의 1% 또는 2%	보험가입금액 × 40% (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)
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	선택가입	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		
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				
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		시설물의 재조달가액,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	(매 사고당) 50만원	
화재원인시설물손해담보특약				

1) 최대 보유가액 :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, 입·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.(보유가액 = 수산물 수량 × 적용가격)

2) 자기부담금 :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 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.

3) [표준형 I 형] 자기부담비율 : 가입시 10%, 15%, 20%, 25%, 30%, 35%, 40% 중 선택

※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, 누적손해율에 따라 양식수산물 상품 유형 및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☑ 보험료 납입방법

구분	납입방법
일시납	가입시 전액납입
본납(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)	2회분납 : 가입시(75%), 2개월(25%)

☑ 보험료 할인제도

구분	대상					
손해율별할인·할증 (-50%~50%)	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(-50%~50%) ※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.					
기타할인(최대10%)	수산양식관리협의회(ASC) 인증여가(5%)					
	저밀도 사육여가(5%)					
무사고할인 최대(9%)	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%					
	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%					
	직전 3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9%					
계속계약할인(3%)	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품종에 대하여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%					
소화설비 할인율 (3%~60%) *화재원인 시설물 손해담보특약 보험료 한정 할인 적용	소화기			3%		
	옥외소화전설비	갑		15%		
		을		12%		
		병		8%		
	옥내소화전설비	갑		10%		
		을		8%		
		병		5%		
	동력펌프자동차	소방자동차		15%		
		기타		8%		
	자동화재탐지설비			8%		
	자동화재속보설비			5%		
	스프링클러설비 (1차급수원 및 2차급 수원이 규정 미달인 경우 10%적용)	갑	모든 시설 규정 적합		60%	
			미달규정의 수 1개		50%	
		을	미달규정의 수 2개		40%	
			미달규정의 수 3개		30%	
			미달규정의 수 4개		20%	
		병	미달규정의 수 5개 이상		15%	
	이산화탄소 소화설비	전역방출방식	자동		20%	
			수동		10%	
	포소화설비	고정포방출구(고정설비) / 포헤드(자동)		단독 설치	옥외포호스, 노즐 병설	
				15%	18%	
		고정포방출(반고정설비) / 포헤드(수동)		10%	13%	
	옥외포호스, 노즐 / 옥내포호스, 노즐		5%	-		
	할론 1301/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	전역방출방식	자동		20%	
수동			10%			
불연내장할인율 (구조급수 1급 또는 2급인 건물) *화재원인 시설물 손해담보특약 보험료 한정 할인 적용	반자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불연재료인 경우			5%		

* 손해율에 따른 할인·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** 소화설비할인율은 설치규정에 맞게 국가공인 검정품으로 설치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건물 및 그 수용동선에 대하여 할인 적용

*** 소화설비 할인은 수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며, 2종 이상의 소화설비가 병설된 경우, 이들 할인율은 60%를 초과할 수 없음

**** 소화설비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이 할인을 적용 함

☑ 만기환급 여부 :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.

✎ 보상안내

☑ 손해보상 대상기간

- ☒ 주계약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(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)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
- ☒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48시간(2일) 이내
- ☒ 고수원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

☞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

구분	보험금 지급사유	보험금 한도
주계약	양식수산물(항어)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(태풍·해일(폭풍해일/지진해일)·호우·홍수·대설·가뭄)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	주계약가입금액 한도
	손해방지비용/대위권보전비용/잔존물보전비용/기타협력비용	약관 참조
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	양식수산물(항어)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(태풍(강풍),호우,홍수,대설,가뭄)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(비상발전기포함),여자기(정류기포함),변류기,변압기,전압조정기,축전기,개폐기,차단기,피뢰기,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,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	특약가입금액 한도
	손해방지비용/대위권보전비용/잔존물보전비용/기타협력비용	약관 참조
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	양식수산물(항어)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(고수온)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(다만, 지자체 또는 「어업재해 피해조사·보고 및 복구지원요령」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)	특약가입금액 한도
	손해방지비용/대위권보전비용/잔존물보전비용/기타협력비용	약관 참조
양식시설 손해담보특약	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(태풍(강풍)·해일(폭풍해일/지진해일)·호우·홍수·대설)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	특약가입금액 한도
	손해방지비용/대위권보전비용/잔존물보전비용/잔존물제거비용/기타협력비용	약관 참조
화재원인시설물 손해담보특약	양식시설물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·소방(화재진압과정중 발생 손해)손해·피난(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)손해	특약가입금액 한도
	손해방지비용/대위권보전비용/잔존물보전비용/잔존물제거비용/기타협력비용	약관 참조

☞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(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)

구분	보험금 계산	지급금액
양식 수산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¹⁾ 전액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)	보험금 - 자기부담금
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¹⁾ × (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)	
양식 시설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²⁾ 전액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)	
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²⁾ × (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)	

1) 수산물 손해액 :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× 적용가격

2) 시설물 손해액 : 원상복구액 - 감가상각액

※ 적용가격 :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,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 3개월간 산지가격을 가장 평균한 가격의 90% 해당액 [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(www.suhyp.co.kr) 공시]

☞ 총보험료 예시

[가입금액 : 양식수산물 1억원, 양식시설물 : 5천만원, 자기부담금 : 손해액 20%, 보험가입금액의 1%(수산물) / 단위 : 천원]

지역	권역	주계약 (1억원)				특약															
						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(1억원)				고수온원인수산물손해 담보특약(1억원)				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(5천만원)				화재원인시설물손해 담보특약(5천만원)			
		계	국고	지방비	자담분	계	국고	지방비	자담분	계	국고	지방비	자담분	계	국고	지방비	자담분	계	국고	지방비	자담분
전북 고창군·익산시·부안군·정읍시	3	567	337	138	92	264	157	-	107	48	28	-	20	100	59	-	41	70	42	-	28
전북 김제시·완주군·전주시		567	337	-	230	264	157	-	107	48	28	-	20	100	59	-	41	70	42	-	28
전남 함평군	4	344	204	112	28	264	157	86	21	32	19	10	3	60	36	19	5	70	42	22	6

※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※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%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,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☁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

자연재해	내용
태풍(강풍)	기상청에서 태풍(강풍)에 대한 기상특보(주의보 또는 경보)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(기상청,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)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/sec(최대순간풍속은 20m/sec)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,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호우	기상청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(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관측소의 측정값)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하며,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홍수	환경부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,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대설	기상청에서 대설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(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관측소의 측정값)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하며,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가뭄	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물부족현상으로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(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실시간 관측자료)가 표준강수지수(6개월 SPI) -1.0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,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고수온	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 현상을 말하며, 지자체 또는 「어업재해 피해조사·보고 및 복구지원요령」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(수온편차 포함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, 보험 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※ 화재에 따른 시설물의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.

☎ 지역본부 연락처

지역	주소	지역 번호	TEL	FAX
경인	(22349)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(항동7가)	032	890-4571~9	890-4674
강원	(25549)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(옥천동)	033	610-2551~6	641-4246
충청	(33490)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7 2층	041	939-9701~3	939-9720
전북	(54081)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29 2층(서흥남동)	063	463-0792, 463-0794	463-0769
전남	(61947)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BM타워 3층	062	950-2523~26	950-2519
경북	(37735)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60 7층(한중빌딩)	054	256-7570~8	256-7574
경남	(51494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수협청사2층(상남동)	055	210-6240~2	210-6208
부산	(48982)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 수협은행 4층(남포동6가)	051	250-2524~5, 250-2521	246-4943
제주	(63124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4층(연동)	064	748-4107~8	746-4107

※ 보험가입 희망시 가까운 영업점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
가입시 알아 두실 사항

● 자필서명의 중요성

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(날인(도장을찍음)을 포함합니다)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.

●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

계약체결 시에는 보유중인 양식수산물·양식시설물에 관한 사항, 타보험 가입사항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약서와 양식장원장 상의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<계약전 알릴의무>, 계약체결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본회로 알려 주셔야<계약후 알릴의무(양식수산물변경기록지)>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

●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정방법

- 이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미평가 보험입니다.
-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보다 적게 가입하면 손해액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<보험가입비율>로 보상하며, 사고 발생시의 보험가액보다 높게 가입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.

● 청약철회 청구제도

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,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● 보험계약의 성립 및 소멸

계약자는 계약성립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, 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됩니다.

● 보험료를 제때 못내셨을 때

제2회차 이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,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계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.

● 보험계약자 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「예금자보호법」 또는 「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」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● 지급제한 사유

- 이 보험에 대한 수험의 책임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는데부터 해당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● 해지환급금

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드리며,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●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

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영업점 또는 전국 대표번호(☎1588-4119)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.

▷ 금융감독원 주소 : (07321)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332

▷ 한국소비자원 주소 : (27738)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(두성리600) /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372

● 품질보증제도

1. 청약서상 자필서명
2. 청약서 부분전달
3.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

※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※ 이 홍보물은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영업점 사용란

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서울 송파구 오금로 62(신천동11-6)

대표전화 : (02) 2240-2114

F A X : (02) 2240-3050



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

1588-4119